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1 - 26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
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관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
○ 2021.06.30. → 2026.06.30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(안 제6 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해당부서: 지역경제과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1. 2. 17. ~ 3. 11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¹⁾하고

1) 2021. 3. 29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“기금존속기간 5년 연장안”에 대하여 원안가결

-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음

○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되어 우리구에서 가장 오래된 기금 중 하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해 왔으며,
- 그 간의 기금 운용실적과 향후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, 그 밖에 조례 상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.

- 다만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-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참고 기금운영 현황

□ 연도별 기금 용자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조성액					집행액			잔액
	계	전입금	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용자성 사업비	
2015년까지	84,064	8,300	70,350	5,414		81,003	500	80,503	3,061
2016년도	5,050		4,990	60		3,450	0	3,450	1,600
2017년도	4,819		4,718	101		2,675	0	2,675	2,144
2018년도	3,324		3,200	124		4,738	0	4,738	△1,414
2019년도	3,025		2,791	134	100	2,965	100	2,865	60
2020년도	5,784	2,200	3,478	106		6,962	200	6,762	△1,178
2021년도	3,880		3,794	86		8,000	0	8,000	△4,120
계	109,946	10,500	93,321	6,025	100	109,793	800	108,993	153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

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3. 「지방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